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1. 4. 4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3월 24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1년 3월 2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6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1년 4월 4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 정 호

가. 개정이유

동 조례안은 청사 내 시설물을 구민의 예식, 문화예술, 강연회, 일반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구민 편의를 증진하고 이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청사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열린 구정을 실현함과 동시에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임

나. 주요개정 내용

- (1) 안 제3조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을 지정하여 제1항제1호에서 구청사 1층 및 지하1층 로비, 제2호의 2층 대강당과 제3호의 구청사 4층 시청각실, 제4호에서 구청사 12층 강당, 제5호에서는 그 밖의 시설물로 하되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시설물 중 구청사 1층, 지하1층 로비는 문화행사, 전시회 등으로 구청사 12층 강당은 결혼식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되 사용료는 전액 무료로 함.
- (2) 안 제4조에서는 사용신청 및 허가 대상자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마포구민.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,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함
- (3) 안 제5조에서는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를 사용예정일 30일전 부터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
- (4) 안 제6조에서는 6개호를 열거하여 사용허가 제외대상을 규정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3개호를 열거하여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
- (5)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의 전액이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사용료의 부과기준과 사용시간에 대해 별표를 두었음
- (6)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되 같은 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납부한사용료 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예외적으로 5개호의 경우 를 두어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
- (7) 안 제12조에서는 사용권리를 구청장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양도 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였고, 안 제14조에서는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

(8) 안 제15조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동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(공공시설의 사용료),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)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31조(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)에 따라 대강당을 비롯한 시설물에 대하여 예식, 문화·예술 행사, 초청 강연회, 문화강좌, 일반행사 등 각종 행사 장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청사 개방 활용으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전기료 등 공공요금 절감과 시설물 유·무상 사용에 따른 망실, 훼손 사고 시 배상책임 한계 등 여러 가지 운영상 보완해야 할 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효율적인 시설물의 관리와 합리적인 청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 및 법제심사,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